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584

발의연월일: 2022. 11. 30.

발 의 자:이병훈·김경만·김의겸

김종민 · 김철민 · 김회재

노웅래・박광온・박 정

서동용 • 유정주 • 이장섭

이형석 • 전재수 • 전혜숙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웹툰산업 매출액 규모는 약 1조 538억원으로 2019년 대비 4,137억원(64.6%) 증가하는 등 웹툰은 비약적 성장을 통하여 만화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은 만화를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한정하고, 디지털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한 만화를 디지털 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만화'로 정의하고 있어 제작단계부터 웹상으로 구현되는 웹툰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웹툰 플랫폼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등 웹툰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웹툰을 비롯한 만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웹툰"을 종이나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 등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가공·처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로 디지털만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만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

법률 제 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를 "저작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디지털만화"란 종이나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 등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가공·처리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만화를 말한다.
 - 가. 웹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되는 만화를 말한다)

나.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제9조의 제목 중 "확립"을 "확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 2.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하나 또는 둘 이상 1. -----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저작물을 말한다.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디지털만화"란 만화를 디지 5. "디지털만화"란 종이나 컴퓨 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

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

다.

- 5. "디지털만화"란 종이나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 등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가공·처리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만화를 말한다.
 - 가. 웹툰(「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 는 만화를 말한다)

6. • 7. (생략)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 ~ ④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등) ① ~ (생 략) <신 설>

나.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 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 공되는 만화

6. · 7.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 2.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 용에 관한 실태조사
- 3.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